

# 격리·역류·이동 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 통제 명령서

제 2020-1229호

가축사육시설	시설명(사업장명) 익산시 사육 가금 및 가금 사육 농장 종사자								
	소재지 전북 익산시 전체								
소유자 (관리자)	성명 익산시 가금 사육 농장 전체				생년월일				
	주소 전북 익산시 전체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이동 제한			명령의 이유 종오리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이행장소 사업장 내			이행기간 2020.12.29. ~ 2021.01. 04		대상 두수 전 수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농장 내 전 가축							
	사람	가축 소유자 및 가족							
	차량	전차량							
준수사항	○ 농장 내 가축 이동 제한, 소독 실시, 타 사육 농가 방문 금지, 방문객의 축사 출입 금지, 분뇨 등 외부반출 금지, 축주 및 차량 외부 출입 시 사전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익 산 시



##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